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확대 근거 마련 등〉

- 이상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35호)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5031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4
1. 지방공기업 당연적용사업 확대	4
2. 지방직영기업 예산 전용 규정 정비	13
3.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실시주체 선임요건 · 절차 강화	15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21
5.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확대 근거 마련	23
6. 출자 타당성검토 예외 근거 신설	26
7. 회계부정 등 관련 벌칙규정 신설 · 강화	32

I . 제 안 경 위

1. 이상식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나. 제안연월일 : 2024. 10. 10.

다. 회부연월일 : 2024. 10. 11.

2. 정부제출안

가. 제 안 자 : 정부

나. 제안연월일 : 2024. 10. 30.

다. 회부연월일 : 2024. 10. 3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상식의원안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해당 지역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간의 상호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주택·토지개발 사업 등 이미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지역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수도권 위주의 개발과 사업시행자 증가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합의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토지개발 사업 등에 대한 예외를 둬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의7 신설).

2. 정부제출안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과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해당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등은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지방공기업 당연적용사업 확대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방공기업의 “당연적용사업”에 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과 ②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정부안 제2조제1항제11호·제12호 신설).

현행	정부안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2)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 ----- ----- ----- ----- ----- -----.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3)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현행	정부안
<u><신설></u> <u><신설></u>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4)를 준용할 수 있다.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 12.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u>제2조제1항 제11호·제12호</u>, 제29조, 제40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u>공포한 날부터 시행</u>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 제49조~제75조의6

제4장 지방공단 제76조~제77조의2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1)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공급할 것.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① 「지방공기업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당연적용사업”(법 제2조제1항)과 ②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임의적용사업”(법 제2조제2항)으로 구분됨.⁵⁾

두 유형 각각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업들은 현행법에 각 호로 열거되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② “임의적용사업”에는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수익성 요건이 있는 반면, ① “당연적용사업”에는 해당 요건이 없다는 점임.

이에 “당연적용사업”에 포함되면 수익성이 다소 낮은 사업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는 실익이 발생함.

따라서 현행법은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인정되어 수익성이 부족하여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음.

참고로, 현행법상 “당연적용사업”에는 i) 수도 관련 사업(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하수도사업), ii) 교통 관련 사업(궤도사업·자동차운송사업·지방도로사업, iii) 지역개발 사업(주택사업·토지개발사업, 주택·토지,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사업,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이 있고, ② “임의적용사업”에는 i) 체육시설업, ii) 관광사업 등이 있음.

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5) 참고로, 지방공기업의 사업이라도 현행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 모두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도 개념상 존재할 수 있음.

[당연적용사업·임의적용사업 규정 연혁]

구분	사업	1970	1980	1992	1999	2004	2005	2019	2021	2024
당연 적용 사업	수도사업	○	○	○	○	○	○	○	○	○
	공업용수도사업	○	○	○	○	○	○	○	○	○
	궤도사업	○	○	○	○	○	○	○	○	○
	자동차운송사업	○	○	○	○	○	○	○	○	○
	주택사업	(임의)	○	○	○	○	○	○	○	○
	하수도사업		○	○	○	○	○	○	○	○
	토지개발사업		(임의)	○	○	○	○	○	○	○
	지방도로사업				○	○	○	○	○	○
	주택·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 관리 등 수탁사업							○	○	○
	공공재개발·공공재 건축사업								○	○
	가스사업	○	○	○						
	시장사업	○	(임의)	○						
	의료사업		○	○	○	○				
	매장 및 묘지등사업		○	○						
	청소·위생사업		○	○						
	지하도로사업		○	○						
	주거장사업			○						
임의 적용 사업	병원사업	○								
	공익전당포사업	○								
	택지조성사업	○								
	도축장사업	○	○	○						
	중기관리사업		○							
	계량기검정사업		○							
	통운도선사업		○	○						
	체육장사업		○	○						
	문화예술사업		○	○						
	공원사업		○	○						
	자동차터미널사업			○						
	체육시설업					○	○	○	○	○
	관광사업		○	(당연)		○	○	○	○	○
	기타 사업	○	○	○	○	○	○	○	○	○

주: 이 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당연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사업들을 시기별로 표시한 것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개정안이 “당연적용사업”으로 추가하려는 사업 중 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⁶⁾에 따른 신에너지(기존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보급하는 사업임.

가령, 현행법 하에서는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의 경우는 원활한 사업비 조달, 전력구매계약 및 계통 확보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여 사업이 추진되지만, 현행법 시행령 상 지방공기업의 출자한도의 제한⁷⁾이 있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참여에 제약이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수소에너지
 - 나. 연료전지
 -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태양에너지
 - 나. 풍력
 - 다. 수력
 - 라. 해양에너지
 - 마. 지열에너지
 -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7)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④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포함시키면, 자치단체가 직영기업 또는 공사 등을 설립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⁸⁾에 따라 정부에 각종 시책 마련 및 보호·육성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신기술·신산업 분야로서 기술·설비에 대한 초기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전술한 “당연적용사업”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다음 ②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은 「해운법」⁹⁾에 따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으로서, 도서 지역에서는 일종의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이해됨.

이러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표와 같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운임 또는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2.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

3.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9) 「해운법」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점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도서지역 주민 및 관광객수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노선이 있을 수 있어, 전술한 “당연적용사업”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지원 조례 현황]

구분	지방자치단체	조례명
광역 자치 단체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
	경기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남	「경상남도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경북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전남	「전라남도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기초 자치 단체	강화	「강화군 여객선 및 도선 지원 운영 조례」
	군산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당진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목포	「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보령	「보령시 섬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보령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신안	「신안군 여객선 운영 및 지원 조례」 「신안군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	「영광군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웅진	「웅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웅진군 영흥면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완도	「완도군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울릉	「울릉군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진도	「진도군 군민 여객선 운임 및 선사 손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통영	「통영시 여객선 운임 및 야간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	「해남군 섬 주민 등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령, ‘인천-백령항로’의 경우는 대형 여객선 운행의 사업성이 낮아서 옹진군이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운항결손금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던 (주)에이치해운의 ‘하모니플라워호’가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2023년 4월 면허(내항여객운송사업)를 반납하였고, 최근(2025. 1. 9.) 옹진군에서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의 협상자대상자 선정 공고를 낸 상태임. 따라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포함시키면, 관련 지방공사 등이 사업을 운영하여 도서 주민들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개정안과 동일하게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하는 「의안번호 220317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7인)」이 2024년 8월 23일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지방직영기업 예산 전용 규정 정비

개정안은 2024년부터 모든 유형의 지방공기업에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조문 중 “품목별 예산제도”의 용어(세항 등)를 “사업별 예산제도”의 용어(정책사업·단위사업 등)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科目)을 제외하고는 <u>세출예산의 각 세항(細項) 및 목(目) 경비</u> 를 전용(轉用)할 수 있다.	제29조(예산의 전용) ----- ----- ----- <u>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u>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제12호, 제29조 , 제40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2024년부터 모든 지방공기업의 예산편성 체계는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되었음.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심의·집행을 인건비·기본경비 등 품목(비목) 중심으로 하는 반면, 사업별 예산제도는 이를 사업(정책) 중심으로 하는 제도임. 전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통제에는 용이하나 사업(정책)별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1980년대 중반 이후 주요국 및 국제기구 중심으로 후자의 도입이 진행되었음.

우리나라도 2007년 중앙정부¹⁰⁾, 2008년 지방자치단체, 2013년 국가공공기관 순으로 이를 도입하였으며, 2024년에는 지방공기업에도 이를 도입한 것임.

[품목별 예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 비교]

구분	품목별 예산제도	사업별 예산제도
주요 편성 단위	품목(비목)별 편성	사업별 편성
관점	단기·미시적 관점	중장기·거시적 관점
집행상 자율성	자율성 제한	자율성 확대
성과주의 예산과의 관계	정합성 낮음	정합성 높음

자료: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제도 개선방안」, 2021, p.10. 등을 바탕으로 제작성

한편, 형식적 측면에서 두 제도가 가장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은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단위의 명칭이 장-관-항-세항인 반면, 사업별 예산제도는 분야-부문-정책사업¹¹⁾-단위사업이라는 점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품목별 예산제도의 용어(세항 등)를 사업별 예산제도의 용어(정책사업·단위사업 등)로 대체하는 것으로서, 예산 제도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법」¹²⁾과 자구를 통일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생각됨.

10) 중앙정부에서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임.

11) 중앙정부는 정책사업 대신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을 사용 중임.

12)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3.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실시주체 선임요건 · 절차 강화

개정안은 ① 지방공기업 결산 과정의 일환인 회계감사의 실시주체 선임요건을 “공인회계사”에서 “회계감사인(회계법인 및 감사반)”으로 개정하고, ② 이를 지방자치단체장 단독이 아닌 회계감사선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정부안 제35조의2 신설 등).

현행	정부안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u>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u>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제35조(결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u>」 제2조제7호¹³⁾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현행	정부안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u>지정하는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u>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u>「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¹⁴⁾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지방직영기업”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u> 제66조(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선임하는 회계감사인</u>----- -----.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회계감사인,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는 <u>「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¹⁵⁾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공사”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제10조”는 “제66조제2항”으로 본다.</u>

현행	정부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u>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u>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제12호, 제29조, 제40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제35조의2 및 제66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u>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u> 한다.	

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1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④ 감사인에 소속되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⑥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에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감사인의 권한 등)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해당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회사 및 관계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및 관계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1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행법상 지방공기업이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회계감사 실시주체의 ① 선임요건(공인회계사 → 회계감사인(회계법인 및 감사반)) 및 ② 선임절차(지방자치단체장 단독 선임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선임)를 강화하려는 것임.

①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실시주체 선임요건 강화

개정안에 따른 회계감사 실시주체인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및 “감사반”¹⁶⁾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회계법인” 및 “감사반”은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책임이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감사인이 감사반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⑦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16) 「공인회계사법」

모두 복수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지방공기업 회계 감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¹⁷⁾에 따른 주식회사·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¹⁸⁾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도 모두 개정안과 동일하게 “회계법인” 및 “감사반”을 실시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합리적이라고 보임.

제23조(설립)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감사반의 등록)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일 것
2. 구성원은 **3명 이상**일 것
3.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구성원이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또는 다른 감사반에 소속되지 아니할 것

1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결산서의 제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②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실시주체 선임절차 강화

현행은 회계감사 실시주체인 “회계감사인”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단독으로 선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① 지방공기업의 1차적인 감독권자로서 책임을 공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회계감사 실시주체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회계감사의 객관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¹⁹⁾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도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필요한 조치로 보임.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제20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이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모두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개정안은 지방직영기업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인용 조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가 2021년 4월 20일 개정되어 같은 법 제10조의2로 이동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정부안 제40조제2항).

현행	정부안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처분)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²⁰⁾ 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²¹⁾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11호·제12호, 제29조, <u>제40조제2항</u> 및 제4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u>공포한 날부터 시행</u> 한다.	

20)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는 인용 조문의 조번호가 변경된 것을 사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률간 체계 정합성 확보상 필요성이 인정됨.

5.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확대 근거 마련

개정안들은 지방공사·공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정부안 제49조제5항 신설 및 이상식의원안 제75조의7 신설).

현 행	정부안	이상식의원안
제49조(설립) ① ~ ④ (생략) ≤신설>	제49조(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사는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의 상호 협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상 호 협의한 지방자치단 체로 한정한다)의 관 할 구역에서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9조(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의7(다른 지방자치 단체 관할구역의 사업) 공사는 설립 지방자치 단체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 간에 상호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 체의 관할구역(시·도와 시·군·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방자치단체 로 한정한다)에서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²²⁾ 에 해당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 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제 12호, 제29조, 제40조제 2항 및 제4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는 2023년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건설 사업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기업인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참여의사를 밝히자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를 반대하면서 발생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공사·공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및 적정 절차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사업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지방공기업의 역량이 지역 관할에 구애 받지 않고 활용되고, 필요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수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① 정부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만을 거쳐 그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② 이상식의원안은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와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동시에, 주택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관할구역 외 사업 추진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의 관할구역 외 사업추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협의”만 거치도록 하는 것은 논란을 해소·완화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이상식의원안과 같이 관할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합의”를 선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사업분야를 제한하는 것은 이미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합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²³⁾들의 법적지위가 불안정해 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시행일의 경우 정부안은 “공포한 날”, 이상식의원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거나 제도시행을 준비·홍보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공포한 날”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23)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골드시티사업(서울-지방 상생형 순환주택 사업)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에게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한편, 이들이 서울에 보유한 주택을 매입·임차하여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재공급해주는 사업으로서, 이미 충남 보령시, 강원 삼척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6. 출자 타당성검토 예외 근거 신설

개정안은 ① 예비타당성조사 등 유사한 사전절차를 거친 경우 또는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출자 타당성 검토를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임(정부안 제54조제3항 신설).

현행	정부안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u><신설></u>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심사를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현행	정부안
③ (생략)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2. 제65조의3²⁴⁾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쳤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제12호, 제29조, 제40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4)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심사 등을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2.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공사가 공동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 이상의 공사의 사장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치고, 다른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4.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5.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지방공기업 출자 타당성검토란 지방공사·공단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는 경우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 받는 것으로서²⁵⁾, 개정안은 ①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²⁶⁾,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투자사업 등 투자심사²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25)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출자규모가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제47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및 검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자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④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내

2.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

3.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

26)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27)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를」상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²⁸⁾,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등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또는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출자인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우선 ①의 경우를 살펴보면, 개정안에서 같음을 허용하는 유사한 절차는 모두 상급기관(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기관(해당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것이고, 다른 타당성조사·검토에도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이를 생략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 ③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6.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7.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유사 절차를 거친 경우 조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

구분	조사·검토 대상 제외 사유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대상 사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 ②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다른 타당성조사·검토에도 사업규모가 소액인 경우 이를 생략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만, 개정안은 타당성 검토 제외의 범위를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i)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는 법률에 그 범위를 규정²⁹⁾하고 있는 반면, ii)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및 「지방공기업법」상

29)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등은 전적으로 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³⁰⁾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조사·검토 대상 제외 금액기준]

구분	조사·검토 대상 제외 금액기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또는 국비지원 300억원 미만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 시도: 총사업비 40억원 미만(사업유형별로 일부 상이) - 시군구: 총사업비 20억원 미만(사업유형별로 일부 상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 또는 국비·공공기관부담 1,000억원 미만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 시도: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 시군구: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0)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②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 ③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7. 회계부정 등 관련 벌칙규정 신설·강화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임직원, 회계감사인 및 회계감사인선임위원의 회계부정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것임(정부안 제81조·제82조 신설 등).

현행	정부안
<신설>	제81조(벌칙) ① 공사의 사장, 공단의 이사장 또는 공사·공단의 감사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64조의2 제1항·제6항³¹⁾(제76조제2항³²⁾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사의 사장, 공단의 이사장, 공사·공단의 감사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 제66조제2항³³⁾(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공사의 사장, 공단의 이사장 또는 공사·공단의 감사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정 부 안
	1. 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2. 회계감사인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82조(벌칙) ① 회계감사인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또는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신 설> 제81조(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이 제65조³⁴⁾ 또는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벌칙) ----- ----- 제65조를 ----- ----- ----- -----

현행	정부안
제82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84조(과태료) (현행 제82조와 같음)
제8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8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 제83조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제12호, 제29조, 제40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공사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33) 「지방공기업법」

제66조(결산)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지방공기업법」

제65조(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

개정안에 따라 신설 또는 강화되는 벌칙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개정안에 따른 벌칙 규정 개정내용]

구분	주체	요건	벌칙	조항
신설	기관장·감사 회계직원	회계처리기준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81①
	기관장·감사 회계직원 및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 미선임 감사보고서 미기재·허위 기재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81②
	회계감사인 및 회계감사인 선임위원	부정청탁에 따른 금품등 요구·수령·제공 및 의사 표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몰수·추징 ※ 경제적 이익의 5배가 3천 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 이하 벌금	§82
	기관장·감사 회계직원	회계감사인에게 거짓자료 제시 또는 회계감사 방해 회계감사인의 요구·조사 거부·방해·기피 또는 자 료 미제출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 미 제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81③
강화	기관장·감사 회계직원 및 회계감사인	결산서 미작성	5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81②

개정안은 대부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부정
관련 벌칙규정³⁵⁾에 준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국가공공기관과 지방공기

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벌칙) ①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은 설립주체만 다를 뿐 국가·지방재정 등을 활용하여 국민과 주민의 생활에 밀집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회계책임에 있어서 차이를 둘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부정 관련 벌칙규정 대비 행위주체를 다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다음 표와 같이 다양한 벌칙규정의 행위주체로서 “「상법」 제635조제1항³⁶⁾에 규정된 자” (이사,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감사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3. 제4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55조(벌칙) ①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정한다.

36)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송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제415조·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감사, 공증인·감정인, 청산인·직무대행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중 기관장 및 감사만을 벌칙규정의 행위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정청탁 등에 대한 벌칙규정의 행위주체로 회계감사인 외에 그 소속 공인회계사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회계감사인만을 규정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벌칙규정 행위주체 비교

요건	벌칙	주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회계처리기준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회계직원	기관장·감사/ 회계직원
회계감사인 미선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회계직원/ 회계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기관장·감사/ 회계직원/ 회계감사인
감사보고서 미기 재·허위기재			
부정청탁에 따른 금 품등 요구·수령· 제공 및 의사표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몰수·추징 ※ 경제적 이익의 5배가 3 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 이하 벌금	회계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회계감사인선임위원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선임위원
회계감사인에게 거 짓자료 제시 또는 회계감사 방해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회계직원	기관장·감사/ 회계직원
회계감사인의 요 구·조사 거부·방 해·기피 또는 자료 미제출			
회계감사인에게 결 산서 미제출			

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2. (생략)

요건	벌칙	주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결산서 미작성	5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회계직원/ 회계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기관장·감사/ 회계직원/ 회계감사인

이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급적 벌칙규정의 행위주체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체계적인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3